해외수학여행 촉진사업 실시요강

1 목적

히로시마공항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히로시마공항 발착의 국제정기편 및 전세기를 이용하여 해외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 일부를 조성하다.

2 정의

이 요강에 있어서 「수학여행」이라함은, 참가자가 교직원과 학생으로, 참가 학생들이 재학 중 1회 실시되는 것을 뜻한다.

3 조성대상자 및 조성액

조 성	대 상		조 선	성 액	조성한도액
			(단원 1인 당)		(1단체 당)
	히로시마공항에	취항 중	2 000 세	100,000 औ	
	인 국제선을	왕복으로			
해외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현	이용하는 해외수학여행		2,000 엔	100,000 엔	
내외 지역의 중학교, 고등학교,	(첫 회 이용시)				
중등교육학교, 고등전문학교,	히로시마공항에	취항 중			
전수학교, 각종 학교 및 특별	인 국제선을	왕복으로			
지원학교 중학부 및 고등부	이용하는 해외수학여행		١ , ٥٥٥ ما	50, 000 all	
(이하'학교') 중 오른쪽 표	(2회 이상)				
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학여행	히로시마공항에	취항 중		1,000 엔	50,000 엔
을 실시하는 곳	인 국내선을	왕복으로			
	이용하는 해외수학여행				

4 사업계획서

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의 교장은 사업계획서(별지양식 제1호)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실시일 1 개월 전까지 히로시마현공항진흥협의회 회장(이하 협의회 회장)에 제출해야함.

5 교부결정

협의회회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성금교부를 결정한 후 별지 양식 2를 통해 교부결정을 통지한다.

6 사업 계획의 변경 등

학교장은 사업 중지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양식 4 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회회장에 알려야한다.

7 실적보고서의 제출

학교장은 사업완료일로 2주 이내에 별지 양식 3을 토대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협의회회장에 제출해야 한다.

8 조성금액의 확정 및 지불

협의회회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후, 적절한다고 판단될 경우 조성금액을 확정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성금액을 지불하도록 한다.

9 조성 요건

- (1) 해외 수학 여행의 참가 인원이 10명 이상일 것.
- (2) 이 요강에 의거한 조성은, 해당년도에 각 학교 당 1회만 가능하다.
- (3) 한 학교에서 방문하는 곳이 2곳 이상일 경우 또는 같은 곳을 2개 이상의 단체가 방문할 경우, 각 방문단을 모두 합하여, 조성한도액까지만 지원한다.
- (4) 해당년도의 조성액 누계가 예산액에 도달할 경우 해당년도의 사업을 종료한다.
- (5)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국 또는 귀국 시 히로시마 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을 이용할 경우 조성액의 반을 지원한다.
- (6) 세토우치 국제 관광 테마 지구 추진 협의회 및 히로시마현 국제 관광 테마 지구 추진 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조성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.
- (7) 입금처가 일본 금융 기관이 아닌 경우 해외송금수수료 등을 포함한 조성한도액을 100,000 엔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, 2004年 4月1日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, 2004年4月22日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, 2006年4月1日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, 2008年4月1日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, 2012年6月14日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요강은, 2014年4月1日부터 시행한다.